

하동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하동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하동군의회 회의 규칙」 제23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6. 3. 5.

하동군의회의회장 강 대 선

1. **조례명:** 하동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 심의위원회에 민간위원 참여를 의무화하고,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및 연구용역 보고서를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여 의원 연구활동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미비 사항 정비

(안 제2조, 제3조, 제4조, 제8조)

나. 심의위원회 구성 조항 신설(안 제6조의2)

- 민간위원 참여 및 제척·회피 규정 마련

다. 부당 사용 시 환수 규정 강행 규정으로 개선(안 제8조)

다. 연구용역 보고서, 예산사용 내역서 제출(안 제11조)

라.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및 연구용역 보고서 홈페이지 공개(안 제12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3월 13일(금)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하동군의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수정의견)
- 2)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3) 기타 참고사항

나. 의견제출 방법

- 1) 팩스: 055-880-2939
- 2) 하동군의회 홈페이지(<http://www.hdcl.go.kr>) 참여마당(의회에 바란다)
- 3) e-mail: jina927@korea.kr

붙임 1.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2. 하동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하동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조례안 내용(조항)	찬 성 여 부		의 건	비고
	찬성	반대		

하동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동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소요되는”을 “필요한”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지양하여야”를 “지양해야”로 한다.

제4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중 “제출하여야”를 각각 “제출해야”로 한다.

제6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의회운영위원장, 각 상임위원회 전문위원, 민간위원을 포함한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의회운영위원장으로 한다.

② 민간위원은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외부 전문가로 의장이 위촉한다.

③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자신이 소속된 연구단체와 관련된 안건을 심사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되며, 그 위원은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제1항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10%”를 “10퍼센트”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위원회는 그 연구활동비의 지급을 중지하거나”를 “의장은”으로, “회수할 수 있다”를 “회수해야 한다”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이행하여야”를 “이행해야”로 한다.

②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할 때 연구용역 보고서, 예산사용 내역서 등 위원회의 심의에 필요한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제12조를 제13조로 하고,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연구활동 등 공개) 의장은 의원연구단체의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및 연구용역 보고서를 하동군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2. (생략)</p> <p>3. “의원정책개발비”란 연구단체의 정책·연구 개발 등에 대한 연구용역에 <u>소요되는</u> 경비를 말한다.</p>	<p>제2조(정의) ----- -----.</p> <p>1. 2. (현행과 같음)</p> <p>3. ----- ----- <u>필요한</u> ----- -----.</p>
<p>제3조(연구단체 구성) ① 연구단체는 각 의원연구단체를 대표하는 대표자를 포함해 3명 이상의 의원으로 구성하고 유사한 연구주제는 <u>지양하여야</u> 하며, 제2조 제3호의 정책연구용역의 경우 중복 또는 유사한 내용의 용역은 시행할 수 없다.</p> <p>② (생략)</p>	<p>제3조(연구단체 구성) ① ----- ----- ----- ----- <u>지양해야</u> ----- ----- -----.</p> <p>② (현행과 같음)</p>
<p>제4조(연구단체 등록) ① 의원이 제3조에 따라 연구단체를 구성하여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등록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연구계획서를 작성하여 매년 2월 말까지 하동군의회 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에게 <u>제출하여야</u> 한</p>	<p>제4조(연구단체 등록) ① ----- ----- ----- ----- ----- ----- ----- <u>제출해야</u> -----</p>

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제출할 수 있으며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되는 연도 등의 경우에는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의원연구단체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에 의거 의원연구단체의 대표자는 지체 없이 변동 사실을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심의회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② (생략)

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하동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제1호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가 대행한다.

<신 설>

---. -----

-----.

② -----

----- 제출해야 -----

제6조(심의회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② (현행과 같음)

<삭 제>

제6조의2(심의회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의회운영위원장, 각 상임위원회 전문위원, 민간위원을 포함한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의회운영위원장으로 한다.

② 민간위원은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외부 전문가로 의장이 위촉한다.

③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자신이 소속된 연구단체와 관련된 안건을 심사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되며, 그 위원은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연구활동비 지원) ① 연구 활동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연구 단체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연구활동 집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등록된 연구단체에 대하여 의정운영공통경비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연구 활동비를 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단,

제8조(연구활동비 지원) ① -----

----- 제출해야 -----.
② -----

-----.

연구단체에 지원할 수 있는 연간 예산액은 의정운영공통경비 예산액의 10% 이내로 한다.

1. ~ 3. (생략)

③ (생략)

④ 의원연구단체가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연구활동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위원회는 그 연구활동비의 지급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급된 연구활동비를 회수할 수 있다.

제11조(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제출) ① 의원연구단체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매년 11월 말까지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③ (생략)

----- 10퍼센트 -----.

1. ~ 3.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④ -----

-- 의장은 -----

----- 회수해야 한다.

제11조(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제출) ① -----

--- 제출해야 -----.

②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할 때 연구용역 보고서, 예산사용 내역서 등 위원회의 심의에 필요한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③ -----

-- 이행해야 -----.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신 설>

제12조(연구활동 등 공개) 의장은
의원연구단체의 연구활동 결과
보고서 및 연구용역 보고서를
하동군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해
야 한다.

제12조 (생 략)

제13조 (현행 제12조와 같음)